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【 목 적 】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등급만료일 까지 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 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까지 별도의 회신 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

제3조 【 입소. 이용료 납부 】

- ① 이용료는 월중 입소 시 당일에 기존 입소자는 매월 초 (1~5일내) 선납한다.(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, 카드, 계좌이체 로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.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.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별도 부담한다
- ⑤ 이용자 부담금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및 식대변경 고시가 있을 시 별도 변경 절차없이 개정한 것으로 한다.
- ⑥ 입금계좌번호: - 농협: 351-0045-2682-23 - 예금주:노인요양원 정원

◇ 시설급여 세부내역 (30일기준)

구 분			1등급	2등급	3등급	비급여(식비)
기준	급여비용(1일)		74,850	69,450	64,040	6,700
	급여비용(30일)		2,245,500	2,083,500	1,921,200	200,000
일반	국가부담(80%)		1,796,400	1,666,800	1,536,960	※ 4,5등급은 3등급과 동일
	본인부담(20%)		449,100	416,700	384,240	
	식비		200,000			
	본인부담총금액(30일)		649,100	616,700	584,240	
감 경 대 상	60% 감경	국가부담(92%)	2,065,860	1,916,820	1,767,510	
		본인부담(8%)	179,640	166,680	153,690	
		식비	200,000			
		본인부담총금액 (30일)	379,640	366,680	353,690	
	40% 감경	국가부담(88%)	1,976,040	1,833,480	1,690,660	
		본인부담(12%)	269,460	250,020	230,540	
		식비	200,000			
		본인부담총금액 (30일)	469,460	450,020	430,540	
의료급여수 급권자 및 기초생활	급여비용		국가부담(100%)			
	식비		지자체 부담(100%)			
	본인부담 총금액		면제			

진찰구분	본인부담금(기준)		
	일반(20%)	감경대상(60%)	감경대상(40%)
촉탁의 초진 (16,970원)	3,390	1,350	2,030
촉탁의 재진 (12,130원)	2,420	970	1,450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. 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한다.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. 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. 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 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 의 의무 (입소자)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 의 의무 (시설)

1.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 의 신변이상을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 의 의무 (보호자)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
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의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‘갑’의 해지

1. ‘갑’과 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

② ‘을’의 해지

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.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.
3. 입소 시 허위사항 보고 및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.
4.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1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.
5. 입원 또는 외박일을 1회 10박, 월15박을 초과 시.
6. 기타 “갑”이 시설운영과 타 입소노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.

제6조 【 퇴소 】

- ① ‘을’은 제4조 1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‘갑’과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갑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